

광 주 지 방 법 원

제 7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0나6945 배당이의  
원고, 항소인 중◇○○○○  
서울 중구 0000가 \_  
송달장소 광주 광산구 00동 \_\_\_\_- (■○○○○본부)  
대표자 은□■ ■ ■ ■ ■ ■ ■ ■  
소송대리인 변호사 공재원  
피고, 피항소인 ♥◇◇◇◇공단  
서울 영등포구 00000가 \_-\_  
송달장소 광주 광산구 00동 \_\_\_\_- (◇★지사)  
대표자 이사장 김○♣  
대리인 김♠☆  
제 1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0. 6. 9. 선고 2009가단84597 판결  
변 론 종 결 2010. 11. 10.  
판 결 선 고 2010. 12.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광주지방법원 2009타경11172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9. 12. 1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91,657,160원을 45,856,96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412,162,959원을 1,457,963,159원으로 각 경정한다.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2. 15. 도산하여 폐업한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대신하여 별표 기재와 같이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인 박♣☆ 등 16명에게 합계 91,657,160원( = 최종 3개월분 휴업수당 명목으로 합계 45,800,200원 + 최종 3년간 퇴직금 명목으로 합계 45,856,960원)의 채당금을 지급하였다.

나. 한편,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광주지방법원 2009타경11172호로 소외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위 집행법원은 2009. 12. 17.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을 1,508,331,689원으로 확정된 다음, 1순위로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위와 같이 채당금을 지급한 임금대위권자인 피고에게 91,657,160원을, 2순위로 조세채권자인 광주광역시 광산구에게 4,511,570원을, 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1,412,162,959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위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다음,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09. 12.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주장 및 판단

###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휴업수당 명목의 체당금 합계 45,800,200원은 근저당권자인 원고에 우선하지 못하므로, 위 금원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최종 3개월분 휴업수당은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간 퇴직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으므로, 위 배당표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 나. 관련법령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가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는 사업주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경우, 노동부장관(또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나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사업주를 대신하여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 및 최종 3개월분 휴

업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위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가지는 미지급 임금 등 청구권을 대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퇴직금채권 우선변제권은 제1항에 따라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사업주를 대신하여 합계 45,800,200원의 휴업수당을 체당금으로 지급한 피고에게 사업주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인 원고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른바 '최우선변제권')가 인정되는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 반대급부인 임금의 일부를 휴업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휴업수당은 다른 법정수당과 달리 『근로기준법』 제3장 '임금'의 장에 속해 있으므로, 임금과 동일하게 취급할 필요성이 클 뿐만 아니라, 만일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같은 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하면서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은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을 택함으로써 휴업수당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있고, 한편,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 근로자는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대하여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이와 같은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고, 휴업수당을 임금과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위 법률규정에 따라 최종 3년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물론 최종 3개월분 휴업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도 위 '최우선변제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집행법원이 최종 3개월분 휴업수당 명목으로 피고가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근저당권자인 원고에 우선하여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한 것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상      \_\_\_\_\_

                 판사      박미화      \_\_\_\_\_

                 판사      신성철      \_\_\_\_\_